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등〉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9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상한을 계약금액으로 규정	3
2.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부여	7
3.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권 부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7.
3. 회 부 일 : 2026.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Ⅲ. 검토의견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의 상한을 계약금액으로 규정

□ 개정안은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의 상한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 ----- ----- -----해당 금액(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 ----- ----- ----- ----- ----- ----- -----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의2제1항¹⁾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의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여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규정함.

□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완료한 후 후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1)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
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연쇄적 도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규모 공사만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2026년 8월 시행)하였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부여, ②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권 부여, ③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상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2025년 11월)하였음.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이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사례²⁾가

2)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1억원, 공사기간이 6개월인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없이 공사대금을 공사가 완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 대금지급주기가 6개월이 되므로 현행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산식을 적용하면 보증금액은 2억원(공사금액의 2배)에 달할 수 있음.

$$\frac{1\text{억원}-0\text{원}}{6\text{개월}} \times 6\text{개월} \times 2 = 2\text{억원}$$

발생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 구성원 대다수가 수급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는 지급보증금액은 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금융비용(보증수수료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현실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2.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부여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u>보증서의 교부</u> 에 의하여 한다.	⑤ ----- ----- ----- ----- ----- ----- ----- ----- ----- ----- <u>-보증서의 교부(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도 교부하여야 한다)-</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 현행 제13조의2제5항³⁾은 원사업자가 행하는 지급보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제13조의2제5항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는 주체가 원사업자인지, 제13조의2제5항 각호의 기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사업자가 교부 주체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⁴⁾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행 규정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4) 예컨대, 제13조의2제5항에 다음과 같은 후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 제⁵⁾가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⁶⁾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5) 202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으나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6)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권 부여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하도급대금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일방이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⑥ (생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 설></u> ⑥ ~ ⑧ (생략)	⑧ 수급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⑥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제1항⁷⁾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 있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7)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그러나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가 설정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현행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⁸⁾에 따라 발주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나, 하도급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다면 발주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⁹⁾

- 즉,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수급

8)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1다64769 판결 등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원사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였음.

사업자에게 도급하고,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음.¹⁰⁾

□ 그동안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고,¹¹⁾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임.

- 즉,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발주자나 원사업자 어느 하나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해당 시점까지 지급받은 원도급대금의 규모, 압류 현황(압류 설정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10)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10억원이고,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8억원을 압류한 상황에서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가 3억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면(직접 지급 요청이 압류 결정 이후 시점), 압류된 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2억원(10억원-8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급사업자는 3억원 중 2억원만 회수가 가능함.

11) 국회에서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의 요건을 축소하고, 하도급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하였고, 정부는 직접 지급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에 마련하였음.

- 나아가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받은 수급사업자가 이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에게도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대한건설협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경우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의 형평에 반하고, 법정 의무를 담보할 실효성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 즉, 현행법 제25조¹²⁾는 제14조를 위반한 발주자나 원사업자만 제재(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제2항¹³⁾에서 제14조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간접적이고, 제재의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임.

12)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개정안이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는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30조의2제5항제3호를 신설하는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는 두지 아니함.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도급계약에 관한 정보에는 영업비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급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간(발주자-원사업자) 체결된 계약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할 필요도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입법화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안 제14조제8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개정안 제14조제6항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해당 정보에 대한 대강의 예시를 두거나, 국회가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는 직접 지급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 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법적 다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¹⁴⁾

1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로서 아래의 정보를 예시로 제시하였음.

① 원도급대금 청구 또는 지급 관련 시점, 주기, 금액, ②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자금 집행순서(토지신탁사업약정상 자금 집행순서 등), ③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가압류압류 현황

문 의 처
02)6788-5109